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25~425p	해설	헌법 2021년 법원직 9급 한눈에 알아보기 <table><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d>06</td><td>07</td><td>08</td><td>09</td><td>10</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td><td></td><td></td><td></td><td></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01 년도 *** 02 년도 *** 03 년도 *** 04 년도 *** 05 년도 *** 06 년도 *** 07 년도 *** 08 년도 *** 09 년도 *** 10 년도 *** 11 년도 *** 12 년도 *** 13 년도 *** 14 년도 *** 15 년도 *** 16 년도 *** 17 년도 *** 18 년도 *** 19 년도 *** 20 년도 *** 21 년도 *** 22 년도 *** 23 년도 *** 24 년도 *** 25 년도 *** 26 년도 *** 27 년도 *** 28 년도 *** 29 년도 *** 30 년도 *** 31 년도 *** 32 년도 *** 33 년도 *** 34 년도 *** 35 년도 *** 36 년도 *** 37 년도 *** 38 년도 *** 39 년도 *** 40 년도 *** 41 년도 *** 42 년도 *** 43 년도 *** 44 년도 *** 45 년도 *** 46 년도 *** 47 년도 *** 48 년도 *** 49 년도 *** 50 년도 *** 51 년도 *** 52 년도 *** 53 년도 *** 54 년도 *** 55 년도 *** 56 년도 *** 57 년도 *** 58 년도 *** 59 년도 *** 60 년도 *** 61 년도 *** 62 년도 *** 63 년도 *** 64 년도 *** 65 년도 *** 66 년도 *** 67 년도 *** 68 년도 *** 69 년도 *** 70 년도 *** 71 년도 *** 72 년도 *** 73 년도 *** 74 년도 *** 75 년도 *** 76 년도 *** 77 년도 *** 78 년도 *** 79 년도 *** 80 년도 *** 81 년도 *** 82 년도 *** 83 년도 *** 84 년도 *** 85 년도 *** 86 년도 *** 87 년도 *** 88 년도 *** 89 년도 *** 90 년도 *** 91 년도 *** 92 년도 *** 93 년도 *** 94 년도 *** 95 년도 *** 96 년도 *** 97 년도 *** 98 년도 *** 99 년도 *** 100 년도 *** ③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헌재 1998. 4.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0-341)을 변경한다(헌재 2009.5.28. 2006헌바109 등)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	0	0	0	0	0	0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0	0	0	0	0	0	0	0	0	21	22	23	24	25						0	0	0	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	0	0	0	0	0	0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0	0	0	0	0	0	0	0	0																																																						
21	22	23	24	25																																																											
0	0	0	0	0																																																											
430p	해설	2021년 법원직 9급 한눈에 알아보기 <table><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d>06</td><td>07</td><td>08</td><td>09</td><td>10</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td><td></td><td></td><td></td><td></td></tr><tr><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01 년도 *** 02 년도 *** 03 년도 *** 04 년도 *** 05 년도 *** 06 년도 *** 07 년도 *** 08 년도 *** 09 년도 *** 10 년도 *** 11 년도 *** 12 년도 *** 13 년도 *** 14 년도 *** 15 년도 *** 16 년도 *** 17 년도 *** 18 년도 *** 19 년도 *** 20 년도 *** 21 년도 *** 22 년도 *** 23 년도 *** 24 년도 *** 25 년도 *** 26 년도 *** 27 년도 *** 28 년도 *** 29 년도 *** 30 년도 *** 31 년도 *** 32 년도 *** 33 년도 *** 34 년도 *** 35 년도 *** 36 년도 *** 37 년도 *** 38 년도 *** 39 년도 *** 40 년도 *** 41 년도 *** 42 년도 *** 43 년도 *** 44 년도 *** 45 년도 *** 46 년도 *** 47 년도 *** 48 년도 *** 49 년도 *** 50 년도 *** 51 년도 *** 52 년도 *** 53 년도 *** 54 년도 *** 55 년도 *** 56 년도 *** 57 년도 *** 58 년도 *** 59 년도 *** 60 년도 *** 61 년도 *** 62 년도 *** 63 년도 *** 64 년도 *** 65 년도 *** 66 년도 *** 67 년도 *** 68 년도 *** 69 년도 *** 70 년도 *** 71 년도 *** 72 년도 *** 73 년도 *** 74 년도 *** 75 년도 *** 76 년도 *** 77 년도 *** 78 년도 *** 79 년도 *** 80 년도 *** 81 년도 *** 82 년도 *** 83 년도 *** 84 년도 *** 85 년도 *** 86 년도 *** 87 년도 *** 88 년도 *** 89 년도 *** 90 년도 *** 91 년도 *** 92 년도 *** 93 년도 *** 94 년도 *** 95 년도 *** 96 년도 *** 97 년도 *** 98 년도 *** 99 년도 *** 100 년도 *** ②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재청구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에 해당하고 위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의 재판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3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	0	0	0	0	0	0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0	0	0	0	0	0	0	0	0	21	22	23	24	25						0	0	0	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	0	0	0	0	0	0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0	0	0	0	0	0	0	0	0																																																						
21	22	23	24	25																																																											
0	0	0	0	0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776p	해설	적으로 보충하여 짐승이 상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짐승이부정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짐승이부정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짐승이부정 고지 대상이 되는 피고자 지칭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하에 이러한 피고자 지칭에 일치 가능한 구에 대해서는 짐승이부정 고지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짐승의 상요행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30. 2011도15212). ④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자를 압수한 경우, 그것에 이미 발한 헌정에서 위 대상자에게 제정한 지문이 위 압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0.30. 2008도7471). 03 난도 *** 정답 ① 〔해설의 이유〕 ① 친고죄가 아닌 고소죄는 공소가 제기되어야 재판에서 친고죄가 아닌 고소의 위법함을 전제하면 행위, 채지 상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행위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판결을 친고죄로 하면 재판이 잘못 될 수는 없고, 각요로 친고죄에 관한 사실관계만 잘못되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친고죄성에도 고소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의 이유〕 ④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환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03조 제1항, 제204항에서 고소환수의 시한과 제205조 규정을 규정하고 제204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0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05조에서 고소와 고소환수의 절차에 관 한 규정을 함께 같이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직권을 위법하지 아니하는 의사로(나) 직권을 위법하는 의사로서서 불법에 관하여 친고죄라는 법의 공평기간에 불기소의 취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4.10. 93도1688). ② 친고죄에 있어 친고죄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발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로서서 사면 뿐만 아니라 구속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속에 의한 고소를 받은 고지 또는 사면결정받은 고지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고지가 독립된 고소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환수를 승인 또는 회부하되서 상환한 경우에 그 진술에 발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로서서 표현되어 있고 그 의사로서서 고사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추권진동에 관한 취재(이하 '소추권진압'이라고 한다) 제20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단말 피고인이 제1심을 볼 수 있는 사실로 공판정에서 출제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추권진압 제203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청구결정이 내려졌다면 피고자는 재심의 제1 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직업을 희망하는 의사로서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16.11.25. 2016도3493). 04 난도 *** 정답 ① 〔해설의 이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 2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을 한 경우 고지, 심판의 불응을 보충하는 사안의 죄를 용감으로 속가 심리가 필요할 부피에한 경우에는 3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해설의 이유〕 ④ 대법원의 피기중을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고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권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판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11.30. 2001도15212). ⑤ 동형 제172조, 제173조제2 05 난도 *** 정답 ① 〔해설의 이유〕 ① 공판정 공판정에서는 당해 소송기록에서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으므로 다른 공판정에서는 다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이 될 수 없으나, 소판정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리에 있어나지 않은 다른 공판정에서는 다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이 될 수 있다(대판 2008.5.30. 2008도3300). 〔해설의 이유〕 ② 공판정 지휘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속한다(형사소송법 제130조). ③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판정 형사사건에서 그 법원에 대한 공판정 개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로 공판정에서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로 그 법원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원판정에 관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로 판결할 것을 개판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10.20. 2008도1010). ④ 공판정에서는 당해 공판정부정 있음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합치라도 공판정 신상하고 공판정 이상 그 공판정 조처에 관하여는 역시 법원이 필요 유효하다고 계속 합치 사정하되(대판 1987.3.5. 83도9493).	① 원래 고소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소송요건인 그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한정하는가는 형사소송절차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에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판 1999. 4. 15. 96도1922 전합)
		수정 사유	해설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